제 8 3 1 호
1982. 8. 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훈
편 집 : 공 보 관 천 형 호
전 화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25-6090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1993 호 : 서울특별시 법령개정으로 인한 서울특별시기획조정 위원회규칙등의 일부개정 폐지규칙 3

◎ 훈 령
제 578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진료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 9

◎ 고 시
제 382 호 :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9
제 383 호 : 도시계획시설 (고속철도) 결정및지적승인 10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384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0
제 385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인가 11
제 386호 :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1
제 387호 :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12
제 388호 :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
승인 13
제 389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4
제 390호 : 서소문구역제 14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15
제 391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5
제 392호 : 광견병예방주사실시 16

◎ 공 고

제 404호 : 환지처분공고 16
제 405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공람공고 17
제 406호 : 관인재교부및 폐기공고 18
제 407호 : 83년도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공고 19
제 410호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공고 20
제 411호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준공 20
제 412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취소 21
제 413호 :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호텔롯데분구건축계획일부변경
공고 21
제 414호 : 서울역 - 서대문 1구역제 1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22

◎ 사 령

◎ 정 정

규 칙

서울특별시 법령 개정등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칙등의 일부 개정 폐지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인)

◎서울특별시규칙제 1993호

법령개정등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칙등의 일부 개정·폐지 규칙(안)

제 1 조(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제 1 항중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제 2 조(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단 설치운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정연구단 설치운영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중 "지방전문직원규정"을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으로 "전임직원"을 "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비전임직원"을 "비전임전문직 공무원"으로 "기획관리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시정연구단장"을 "시정연구관"으로 한다.

제 3 조(서울특별시 직무대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중 1,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직제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2.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 부장이나 담당관이 있는 사업소는 실장, 부장이나 담당관이, 과가 있는 사업소는 과를 설치하는 조례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가 없는 사업소는 계가 있을 때에는 계를 설치하는 규칙에 규정된 계의 순위에 의한 계장이, 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중의 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2.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리실장, 서울특별시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제 2 조 규정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2. 기획관리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연구관, 투자관리관순으로 대리하고, 감사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사무분장 규칙에 규정된 담당관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대리한다.

제 4 조 (서울특별시 외자도입 심의회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자도입 심의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 위원은 재무국장, 투자관리관과 관계국장 (직할사업소장포함)이 되며 위원장은 전문지식을 가진자중 3인이내에서 별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투자관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상공과장, 건설행정과장, 지하철도과장, 관재과장이 된다.

제 5 조중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중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투자관리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경영분석계장이 된다.

제 5 조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중 "법무과장"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중 "총무과 (기획감사계)"를 "기획감사과 (기획예산계)"로 한다.

제 13 조 제 1 항중 "총무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제 32 조 제 1 항중 "감사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 6 조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 나목중 "수도행정자문위원회의"를 "정책자문위원회의"로 한다.

제 3 조 제 2 항중 "제 1 부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 4 조 제 2 항중 "총무과장"을 "외전과장"으로 한다.

제 7 조 (서울특별시 외빈영접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 별표중 출영 및 환송난의 "총무과장"을 "의전과장"으로 한다.

제 8 조 (서울특별시 시민상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상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2 조 제 2 항중 "공보실장"은 삭제하고 "감사과장을"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시정연구제장"은 "지도계장"으로 한다.

제 9 조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2 항중 "제 1 부시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제 6 조 제 2 항중 "문화재담당관"을 "문화과장"으로 한다.

제 10 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제 1 호중 "세정과장"을 "재정기획과장"으로 한다.

제 11 조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과징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구청장, 출장소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 (자동차등록에 따른 시세는 자동차 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 12 조 (서울특별시립 새마을 노인회관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립 새마을 노인회관 설치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1 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 13 조 (서울특별시 증기조정면허시험 위원회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증기조정면허 시험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 [illegible] 교육원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원장이, 부위원장은 [illegible] 부장이 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illegible] 서기 [illegible] 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원 [illegible]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원 [illegible] 2 직원이 된다.

제 14 조 (서울특별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명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도시교통의 완화"를 "도시교통의 원활"로 "건설국"을 "건설관리국"으로 "도로관련"을 "도로굴착관련"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련된 사항
5. 기타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간선 및 포장도로 유지관리와 교통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제1호중 "회무를 통리한다"를 "그 회무를 통리한다"로 하고 제2호중 "(서열순위)"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진행)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연4회 분기별로 소집(매분기초)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소집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협의 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 관련사업 관련기관의 장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호중 "2" 및 "약간인"을 각각 "1"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2. 간사는 건설관리국 도로과장으로, 서기는 도로과 도로시설계장으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창 수가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창 수가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명을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 정비수가 규칙"으로 하고

이. 규칙중 "자동차정비창"은 "자동차관리사업소"로 "자동차정비창장"은 "자동차관리사업소장"으로 "창장"은 "소장"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중 "담당정비공노임"을 "담당정비원노임"으로 한다.

제 16 조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직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직인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중 "업무과장"을 "업무과장 (과징계장)"으로, "경리과장"은 "업무과장 (경리계장)"으로 한다.

제 17 조 (서울산업대학부설수도권개발연구소 규정의 개정) 서울산업대학부설수도권 개발연구소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규칙명을 "서울시립대학부설수도권개발연구소 규칙"이라 한다.

제 1 조중 "서울산업대학"을 "서울시립대학"으로 한다.

제 2 조 제 2 항중 "3 명"을 "5 명"으로 하고 "사계의 권위자"를 "사계의 전문가"로 한다.

제 4 조중 본문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 (사업) 연구소는 수도권의 종합적인 개발, 시민생활환경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시립대학으로서 서울특별시 행정발전, 산학협동 그리고 학술이론의 발전등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4) 기타 수도권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 2 호 각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계획분야
나. 도시설계분야
다. 도시행정분야
라. 도시공학분야
마. 도시경제 및 경영분야
바. 환경계획 및 기타 분야

제 18 조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개정) 서울특별시 규칙중 다음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급은 우란의 직급으로 한다.

1 급	1 급
2 급 갑류	2 급
2 급 을류	3 급
3 급 갑류	4 급
3 급 을류	5 급
4 급 갑류	6 급
4 급 을류	7 급
5 급 갑류	8 급
5 급 을류	9 급

제 19 조 (고용직의 명칭 개정) 서울특별시 규칙중 "고용원"은 "고용직공무원"으로 한다.

제 20 조 (서울특별시 기능관리관 운영규칙등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 기능관리관 운영규칙
2. 서울특별시 서정쇄신추진위원회 규칙
3. 서울특별시 지방잡급직원에 대한 급여규칙
4. 서울특별시 아이디어뱅크 설치 규칙
5. 서울특별시 감호학생위탁교육비 보조금 지급규칙
6. 서울특별시 시장사무취급규칙

7. 서울특별시 축산자금융자 규칙
8. 서울특별시 농사자금융자 규칙
9. 서울특별시 농가개량선도자금융자규칙
10. 서울특별시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11. 서울특별시 종합설계실 운영규칙
12. 서울특별시 공해방지조사 심의회 규칙
13. 서울특별시 자동차정비사업소종업원 규칙
14.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에 관한 처분요령시행규칙
15. 서울특별시 관광삭도업시설검사 규칙
16. 서울특별시 운전자안전운전교양규칙
17. 서울특별시 싸이렌설치 사용 허가 사무취급 규칙
18. 서울특별시 등화관제규칙 시행세칙
19. 서울특별시 지하철광고업무 취급규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근무부서명	직위	근무부서명	직위
1. 한국전력주식회사	송변전부장	1. 국방부	시설국장
2. 〃	배전부장	2.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지사장
3. 〃	서울전력소장	3. 〃	중앙건설사무소장
4. 체신부	시설국장	4. 〃	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
5. 〃	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	5. 〃	남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
6. 〃	국제전신전화건설국장	6. 한국전력공사	배전부장
7. 〃	서울체신청공무과장	7. 〃	지중선사무소장
8. 국방부	시설국장	8.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장
9. 서울특별시	도로과장	9. 〃	상하수국장
10. 〃	도로시설과장	10. 〃	산업경제국장
11. 〃	도로보수과장	11. 〃	지하철건설본부장
12. 〃	구획정리과장	12. 서울지하철공사	서울지하철공사토목이사
13. 〃	하수시설과장	13. 서울시종합건설본부	공정관리실장
14. 〃	급수과장	14. 서울특별시	경찰국교통과장
15. 〃	수원과장		
16. 〃	시설과장		
17. 〃	도시가스과장		
18. 〃	도시가스사업소장		
19. 〃	지하철본부건설과장		
20. 〃	경찰국교통과장		

서울특별시립병원진료위원회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 년 9 월 23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

훈　　령

◎서울특별시훈령제 578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진료위원회규정중 개정 규정

서울특별시립병원진료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1항중 "으로 구성한다"를 "및 병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로 하고 동조 제 2 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약사 소위원회에는 약사 2명을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9조 (시행세칙) 이 규정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382 호

주택개량을위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1.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공고 제 12호 (80. 1. 16) 및 서공고 제 189 호 (82.5.6) 로 공람한바 있는 응암 2 지구 및 답리지구 일부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41조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구역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한다.

2. 관리처분 계획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9.17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고시제 383 호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결정및 지적승인

1. 당시 관내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521호(81,12.31)의 권한위임사항에 따라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9.17

서 울 특 별 시 장

o 고속철도(부대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시 설 명	폭원 M	연장 M	면적 M^2	시 점	종 점
고속철도부대시설(반입선)	6-15	330	2200	중구봉래동2가 43의47 일대	용산구동자동43의42일대
〃	7	600	4200	중구장충동2가 193의276 일대	중구쌍림동173의6일대

o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끝.

◎서울특별시고시제 384 호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규정에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년 9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 1-1042
   (주) 라이프 대표 조내벽
3. 사업시행지
   위치 : 강동구신천동 17-6
   면적 : 18,497.23 ㎡
   규모 : 10층2동120세대 및 상가1동
4. 사업시행기간 : 1982.9 - 1983.9.30
5.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 38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인가

1.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인가된 강남구 방배동 974-22 번지 일대 이수중학교 부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고 제15호(82.3.30)로 14일간 이해관계인에게 서류공람 및 의견 청취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건설부 고시 제521호(81.12.31) 권한위임사항 내부위임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9.20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강남구방배동 974-2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이수중학교)
다. 사업의 규모
   o 부지면적 - 13,23[illegible] ㎡
   o 건축면적 - 1,08[illegible] ㎡
   o 연 면 적 - 3,942 ㎡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o 착수예정일(인가일) - 82.9.
   o 준공예정일 - 83.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별첨 생략)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별첨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86 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7조의2 및 건설부고시 제521호(81.12.31)의 권한위임사항과 도시계획변경 통제규정 제3조7 제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21

서 울 특 별 시 장

○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63	30-50	4,100	장충체육관	압구정동 (대 2-30)	일부구간 폭원확보
변경	〃	〃	〃	30-65	〃	〃	〃	

○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87 호

도시계획사업 (고속철도) 실시계획인가정정고시

1. 건설부고시제 214 호 (78.8.2), 건설부고시 제 313(78.10.20)에 의거 지하철 2 호선 건설공사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2 호 (81.7.16)의 토지조서내용중 별첨과 같이 착오된 부분을 정정하고 동법 제 26 조와 건설부 고시 제 521 호 (81.12.31)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지하철건설본부 기획조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21

서 울 특 별 시 장

토 지 조 서 (당 초 및 정 정)

당초					정정				
동 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동 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마포구 노고산동	57-1	대	119㎡	서대문구 윤경수 창천동 30-1	마포구 노고산동	57-62	대	149㎡	서대문구 윤경수 창천동 30-1

당초					정정				
동 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동 명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주소성명 관계인주소성명
마포구 노고산동	40-44	대	㎡ 90	강남구반포 원태균 동 279-5 신반포㉮ 21-104	마포구 노고산동	40-69	대	㎡ 91.5	강남구반포 원태균 동 279-5 신반포아 21-104
〃	40-49	〃	㎡ 20	〃 〃	〃	40-70	〃	㎡ 20.1	〃 〃
〃	40-50	〃	㎡ 3	마포구 기신윤 노고산동 외 1 인 40-48	〃	40-71	〃	㎡ 17.7	마포구 강신윤 노고산동 외 3 인 40-48

◎서울특별시고시제 388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여객자동차정류장)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6호(82.5.14) 및 동고시 제354호(82.8.3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 및 여객자동차 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521호(81.12.31) 권한위임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 승인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2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지적승인조서

구 분	시설명	위 치	규 모	비 고
신 설	학 교	강서구염창동 284 일대	13,501 ㎡	
	〃	〃 신월동 610-3 일대	13,303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지정	소로	3 류	6 m	60 m	강서구신월동 610-1	강서구신월동 610-1	
변경	〃	〃	〃	〃	〃	〃	
신설	〃	〃	〃	〃	〃 609-4	〃 609-5	

다.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여객자동차정류장	강서구방화동 657-1	1,408 ㎡	시내버스 (소신여객)

라. 지적승인도면 1부.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389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82 호 (80.3.3) 로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권한위임에 의거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사항 변경하고 고시한다.
2. 변경사항은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22

서 울 특 별 시 장

라. 변경사항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산 174-174 외 29 필지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영락상고
다. 사업시행면적 : 13,363㎡ (4,042 평)

준공기한 연기	당초	착공일 : 81. 3. 5 당초준공예정일 : 81. 8.15
	변경	1 차변경 : 82. 5.30 금회변경 : 82.10.15
사업시행자 명의변경	당초	서울특별시은평구응암동 226-13 학교법인 영락학원 이사장 박 조 춘
	변경	서울특별시강남구반포동 254 번지 신반포 3 지구아파트 37 동 402 학교법인 영락학원 이사장 최 창 근

◎서울특별시고시제390호

서소문구역제14지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428호(78.12.29)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된 서소문 14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1982. 9. 2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의명칭 :
서소문 제14지구 재개발사업
나. 시행구역 :
중구남대문로4가 45-1 외 11필지
다. 시행면적 :12,675.7㎡(3,834.4평)
○대지면적 : 11,553.6㎡ (3,494.96평)
○공공시설면적 : 1,122.1㎡ (339.4평)
라. 건축개요
○건축면적 : 약 3,250㎡(건폐율 29%)
○연 면 적 : 약 48,000㎡
(용적율 약 290%)
○주 용 도 : 업무시설
○층 수 : 지하3층, 지상12층
○소 재 지 : 중구남대문로4가 45-1
마. 시행기간 :
1982. 9. 22 ~ 1984. 12. 31
바.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중구소공동 111 서울상공회의소(회장 : 정수창)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고시제391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4호(82. 5. 12)로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된 도봉구 수유동 484-21 외 1필지 한빛맹아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건설부고시 제521호(81. 12.31)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82. 9. 23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 수유동 484-21 산 162-10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명칭 : 한빛맹아원직업보도실(지층-2층)
다. 사업의규모및명칭 :
1) 대지면적 : 3,144㎡
2) 건물면적 : 건축면적 기존85㎡
증축19

연면적 기존 1,347㎡, 증축 480㎡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 484-21

사회복지법인 한빛원 이사장 김봉용

마. 사업시행기간:

1982. 9. 30 ~ 83. 9. 30 (예정)

바. 위치및공사제외범위도: 별첨 (도면 생략)

* 도면은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 392 호

광견병예방주사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함을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82. 9. 24

서 울 특 별 시 장

1. 실시목적: 광견병예방
2. 실시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3. 실시대상: 축견 (개)
4. 실시기간: 82.10.5 ~ 10.30.
5. 기타사항

본 기간중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축견 (개)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살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404 호

환 지 처 분 공 고

1. 당시가 '71.8.24 자 및 '75.2.14 자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얻어 사업시행한 영동 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및 추가지구 토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하였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 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서류 송달은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통보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한다.

1982. 9. 20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가. 사업명: 영동 2 지구 일부 및 추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환지처분대상위치 : 강남구청담, 삼성, 대치, 도곡, 역삼, 반포동각일부

다. 환지처분면적 : 896 만평중 80 만평 (영동2지구 2공구 476 부럭 유수지 제외)

라. 관계도서의 열람 :

1) 환지처분내용 : 지번, 지목, 지적 증감에 대한 관계도면은 당시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강남구청 시민봉사실

2) 청산금 :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마. 공부정리 :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공부상의 지번, 지목, 지적은 환지처분내용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므로 동 변경된 사항을 당시에서 공부를 정리할 것이나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는 청산금납부즉시 정리되며 체비지 소유자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서 이전등기 절차를 취하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소정양식), 체비지계약서 및 명의변경승인서, 확정된 토지대장등본 1부, 매도증서 및 위임장 각2부)

바. 청산금의 징수교부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의 토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공부의 열람후에 별도로 통지할 것이나 개별통지 이전이라도 징수 및 교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공고제 40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13 호 (82.8.12)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363 호(82.9.3)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지정 고시된 동대문구 장우동 220 번지외 1 필지와 건설부고시 제 11 호(67.1.21)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51 호 (75.2.24.)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확정지역 (망우지구 239 구획) 및 동대문구 장우동 519 번지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 제 10 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의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영란여자중상업고등학교 (서무과) 및 혜원여자중고등학교 (서무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2. 9. 20.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1) 동대문구망우동 220 번지외 1 필지 (영란여자중상업고교)
2) 동대문구망우동 519 번지 (혜원여자중고교)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다. 사업면적및규모
면적 (토지) :
1) 35,452.40 ㎡ (영란여자중상업고교)
2) 26,438.70 ㎡ (혜원여자중고교)
규모 (건물) :
1) 13,858.79 ㎡ (기존)
874.80 ㎡ (증축예정)
(영란여자중상업고교)
2) 10,744.734 ㎡ (기존)
719.69 ㎡ (증축예정)
(혜원여자중고교)
라. 사업시행자의주소·성명
1) 동대문구망우동 220 번지외 1 필지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김 영 의
2) 동대문구망우동 519 번지
학교법인 혜원학원
이사장 홍 세 표
마. 사업의착공및준공예정일 :
○ 착공예정일 : 1982.10.
○ 준공예정일 : 1983.12.31.
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및 토지소유자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영란여자중상업고등학교 및 혜원여자중고등학교(서무과)에 비치
사. 공람기간 : 공포일로부터 14 일간
아. 기타 상세한 것은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와 영란여자중상업고등학교 및 혜원여자중고등학교 서무과에 문의할 것.

◎서울특별시공고제406호

관인재교부및폐기공고

용산구청장의 직인을 관인규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교부 및 폐기함을 동규정 제9조 및 동규칙 제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2. 9. 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용일자 : 1982.9.25.
가. 재교부직인 :
○ 용산구청장인
○ 용산구청장인 (호적, 병사용)
나. 폐기직인
○ 용산구청장인
○ 용산구청장인 (호적, 병사용)

공 인 의 인 영			
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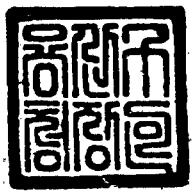		
공인명	용산구청장인	용산구청장인 (호적, 행사용)	계 인

◎ 서울특별시공고제 407 호

83년도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83년도 제안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2. 9. 22.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제도의 목적
   - o.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의 장려 개발
   - o.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
   - o. 공무원의 참여의식, 문제 해결 능력증진
2. 제안의 종류
   - o. 자유제안 :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는 제안
   - o. 직무제안 :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안
   - o. 지정제안 :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
3. 제안자의 자격과 수
   - o. 제안자격 :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 공무원
   - o. 제안자의 수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와 공

동제안을 하게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모집기간

o 82.10.1 - 83.[illegible].30

o 82년도 제안모집 : 82.10.31 마감

5. 제출서류

o 제안서 3부

o 제안내용 설명서 3부

o 경비절감 산출내역서 3부

o 직무제안 추천서(직무제안에 한함) 1부

6. 창안자에 대한 특전

o 창안상 및 부상금

창안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 려 상	노 력 상
부상금(최고액)	500 만원	250 만원	150 만원	50 만원	30 만원

o 인사상 특전

· 특별승진 : 창안등급 동상이상

· 특별승급 : 창안등급 장려상이상

o 상여금 지급

· 창안실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

7. 접수처 및 문의

시정개발담당관실 제도개선계

(지하) 725-6403, 722-5209

(구내) 340, 418. 651

◎ 서울특별시공고제 410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공고

국세징수법 제7조 제4항의 구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의 등록을 아래와 같이 말소한다.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말소일자	비 고
80-36	보민건설(주)	이덕모	성동구구의동 243-63	1982. 9. 6	

1982. 9. 23.

서 울 특 별 시 장

◎ 서울특별시공고제 411호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 시행허가준공

1. 서울특별시고시 제110호(82.3.17)로 도시계획사업(소매시장) 시행허가된 사항이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57조와 건설부고시 제521호(82.12.31)에 의거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24.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준공사항
(1) 사업시행지 : 강서구 신정동 276-69 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명칭 : 신정종합시장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 주식회사 새로와 대표 정 광락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 가 46
(4) 사업기간 : 착공일 : 82. 6. 2
준공일 : 82. 9.24
(5) 준공토지면적 : 2,159 ㎡
건물면적 : 1 층 918 ㎡
2 층 120 ㎡
지하실 120 ㎡
계 1,158 ㎡
(6) 준공토지조서 : 별첨과 같음 (생략)
(7) 준공도면 : 별첨소매시장용지 준공도 (생략) .

◎ 서울특별시공고제 412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취소

1 . 서울특별시 고시제 187 호 (82.5.6) 로 도시계획 사업 (학교) 시행 허가한 용산구 서계동 259-3번지의 배문중 · 고등학교의 도시계획 사업을 도시계획법 제 78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였기 공고한다.
2 .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배문중 · 고등학교 서무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9. 24.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259-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사업 (학교) 증축
2. 명칭 : 배문중 · 고등학교
다. 시행자주소, 성명
1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방배동 1514
2 . 성명 : 학교법인 성산학원
라. 사업의 규모 : 증축 932.08 ㎡
마. 사업예정기간 : 1982. 6. 1. - 1982. 9.30.
바. 취소사유 : 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부결.

◎ 서울특별시공고제 413호

반도특정가구정비지구호텔롯데분구건축계획일부변경공고

1 . 서울특별시고시 제 19호 (76.3.13) 로 확정된 반도특정가구 정비지구 호텔롯데분구 건축계획에 대하여 건축법제 33 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 7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하였기 이에 공고한다.

1982.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 가 180-6 번지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반도특정가구 호텔롯데분구 정비사업

다. 변경내용 : 건축면적 (연면적) 증가

규 모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연 면 적	206,121,987 ㎡	206,566.467 ㎡	지하 1 층 유흥음식점 438,480 ㎡ 증가

라. 시행자의 주소, 성명

주소 : 중구을지로 1 가 180-6

성명 : 주식회사 호텔롯데 대표이사 조 동 혜

마. 공사기간 : 1982.9.25-1983.3.31

바. 기타 관계도서는 별첨 (공고생략)

◎ 서울특별시공고제 414 호

서울역-서대문 1 구역제 1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을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6 호 (82.3.10)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서울역-서대문 1 구역 제 1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제 15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며

2.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 및 개별통지 누락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갈음한다.

1982.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시행구역 : 당초 - 22,059.2 ㎡
변경 - 22,060.3 ″

나. 대지면적 : 인가서와 동일

다. 공공용지부담면적 : 당초-5,373.4 ㎡
변경 - 5,374.5 ″

라. 변경내역

당 초				변 경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제		136.8 ㎡		제		137.9 ㎡	
순화동 65-6	대	45″	최 승 우	순화동 86	대	28.8″	김 근 상
″ 69-7	대	48.8″	김 순 배	″ 86-3	대	66.1″	″
″ 82	대	43″	박 갑 서	″ 87	대	43″	″

마. 변경사유 : 시행구역변경
바. 공람기간 : 1982.9.25-82.10.24
(30 일간)
사.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재개발과 (728-4627)
아. 기타 : 인가서와 동일

사　　령

◎ 1982 년 9 월 23 일　　령제 494 호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지 방 기 제 기 사　　한 상 배

연료과 파견근무를 명함.
(82.9.23-82.12.31)

영 등 포 구
지 방 전 기 기 사 보　　강 도 석

시민과 파견근무를 명함.
(82.9.23-82.11.15)

◎ 1982 년 9 월 24 일　　령제 [illegible] 호

용산구건설관리과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최 홍 수

도시계획과 파견근무
(82.9.24 - 82.12.31)

강남구건설관리과
지 방 행 정 주 사 보　　박 상 [illegible]

도시계획과 파견근무
(82.9.24-82.12.31)

구로구건설관리과
지 방 행 정 주 사 보　　강 [illegible] 일

도시계획과 파견근무
(82.9.24 - 82.12.31)

강서구민방위과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안 [illegible] 기

도시계획과 파견근무
(82.9.24 - 82.12.31)

령제 [illegible]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신 수 목	지하철안전점검진달요원과견	지 하 철 도 과	지방행정사무관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근무를 해제함.		
이 원 길	지하철도와 파견근무를 해제함. (지하철안전점검전담요원)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좌
유 학 조	〃	서 대 문 구	〃
정 지 교	〃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
유 기 운	〃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보
김 영 환	〃	〃	〃
이 성 기	〃	〃	〃
원 윤 식	〃	서 대 문 구	지방행정주사보
	종로구 근무를 명함.		

령제 197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송 석 표	지하철공사 파견근무를 명함. (안전점검요원) (82.9.24-82.12.31)	동 작 구	지방토목기사
김 남 수	〃	구 로 구	〃
정 혁 규	〃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보
석 순 동	〃	〃	〃

정 정

구 분	시보호수및발간일자	사령호수	성 명	변 경 사 항
당초	제 928 호 82.9.3	령474호	윤장희	지방행정주사보
정정	〃	〃	〃	지방행정주사